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식 제공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 또는 심리상담 등의 방법으로만 갱생 보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시설의 면적, 설비 및 종사자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숙식 제공 등을 하는 갱생보호사업의 경우보다 완화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2. ~ 2023. 1. 3., 2023.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갱생보호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

1. 시설의 규모 및 설비

입소정원 면적·설비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1명당 시설면적	13.22m ² 이상	13.22m ² 이상	9.9m ² 이상
1명당 거실면적	4.95m ² 이상	4.95m ² 이상	4.95m ² 이상
설비	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화장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교육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 등	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화장실, 교육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 등	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화장실, 교육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비고

-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숙식 제공을 하지 않는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시설면적은 49.59m² 이상으로 하며, 설비는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교육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으로 한다.
- 2) 사무실 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거나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구 및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면적은 13.22m²×100+13.22m²×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 6)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명 이하이고 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7)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한 갱생보호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를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입소정원 종사자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시설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지도사	2명	1명	1명
사무원	1명	1명	1명
조리사	1명	1명	1명

비 고

-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숙식 제공을 하지 않는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지도사 1명 이상을 배치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해당 지도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도사를 겸할 수 있다.
- 2) 직업훈련을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지도사로 배치해야 한다.
- 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또는 갱생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지도사로 배치해야 한다.
- 4)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도사를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5)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도사가 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3. 시설종사자의 자격

종 사 자	자 격 기 준
시설장 (숙식 제공을 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임·직원 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 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거나 교정·보호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종무(宗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장 (숙식 제공을 하지 않는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임·직원 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 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교정·보호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차.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카. 종무(宗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및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갱생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갱생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경 고 장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보호관찰대상자 ○○○에 대한 경고장

1. 귀하는 현재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중에 있습니다.
2. 귀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3. 귀하가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구인·유치·처분취소·형사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경고이유서 1부

○○○○년 ○○월 ○○일

○○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관: (인)

담 당 자:

문 의 전 화:

○ ○ 보호 관 찰 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신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목 유치허가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에 유치하고자 하오니 유치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구 인 일 시	. . . :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1. 준수사항 위반사실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 검 찰 청

수신 ○○법원장

년 월 일

제목 유치허가 청구

위와 같은 유치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치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u>	<u>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u>
<u>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u>	<u>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u>